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6일

개정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근	김 *근 1903-10-18	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(개정동)	직권말소 2021-11-25
방 *례	방 *례 1908-09-21	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(개정동)	직권말소 2021-11-25